##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(박수영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5514

발의연월일: 2022. 5. 6.

발 의 자: 박수영·강대식·김영식

김예지 · 백종헌 · 서병수

이명수・이주환・정동만

황보승희 의원(10인)

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총회는 조합장이 직권으로 소집하거나 조합원 5분의 1 이상(정관의 기재사항 중 제40조제1항제6호에 따른 조합임원의 권리·의무·보수·선임방법·변경 및 해임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기 위한 총회의경우는 10분의 1 이상으로 한다) 또는 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요구로조합장이 소집하도록 하고 있음.

하지만 시공자 선정과정에 있어 선정되지 못한 건설업자가 본인을 지지했던 조합원들을 지원하여 각종 가처분 및 소송, 조합임원 해임 등 분열 일으켜 총회결과를 무효화 시키거나 재산정을 추진하려는 경 우가 종종 발생해 조합원을 분열시키고 재개발 사업을 장기간 표류시 킨다는 지적이 있음.

이에 총회의 소집 요건에 인감증명서 등 본인확인절차를 강화하여 재개발사업을 안정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(안 제44조제2

항 후단 신설).

법률 제 호

###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
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4조제2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이 경우 조합원 또는 대의원의 요구는 주민등록증·여권 등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사본 또는 인감증명서의 제출 등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확인하여야 한다.

#### 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 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44조(총회의 소집) ① (생 략)	제44조(총회의 소집) ① (현행과
	같음)
② 총회는 조합장이 직권으로	2
소집하거나 조합원 5분의 1 이	
상(정관의 기재사항 중 제40조	
제1항제6호에 따른 조합임원의	
권리·의무·보수·선임방법·변경	
및 해임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	
기 위한 총회의 경우는 10분의	
1 이상으로 한다) 또는 대의원	
3분의 2 이상의 요구로 조합장	
이 소집한다. <u>&lt;후단 신설&gt;</u>	<u>이 경우 조합</u>
	원 또는 대의원의 요구는 주민
	등록증·여권 등 신원을 확인할
	수 있는 신분증명서 사본 또는
	인감증명서의 제출 등 대통령령
	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확인하여
	<u>야 한다.</u>
③ ~ ⑤ (생 략)	③ ~ ⑤ (현행과 같음)